

『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1995년경 조례 제정 당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업자금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- 제정 당시 목적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으며,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행위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」 폐지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조례제정 당시(1995년)의 목적이, 당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전업자금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, 현재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어, 더 이상 조례의 실효성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